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위생과-1053
등록일자	2016. 1. 13.
결재일자	2016. 1. 13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식품위생팀장	위생과장	보건소장
김정숙	김용만	신길호	01/13 서명옥
협조자			

- 청결하고 안전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-

2016년도 강남구 식품진흥기금관리 용자계획

- 용자규모 : 12억원 (시설개선자금 8억원,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4억원)
- 용자대상 : 관내 영업신고 된 식품접객업소와 모범음식점
- 운용은행 : 신한은행
- 용자종류 및 조건

구 분	용자 한도액	용자금리	상환 조건
· 일반휴게·제과점 시설개선자금	1억원 이내 (총소요금액의 80%)	연리2%	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
·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	2천만원 이내 (총소요금액의 80%)	연리1%	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
· 모범음식점 육성자금	5천만원 이내	연리2%	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

16년도 기금관리운용계획
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자 예산 조기집행
- 용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강화
- 기금 용자실적 및 조기상환 대상 관리 등 사후관리 철저
- 시설개선공사 전 용자신청시 자금 교부 후 관리절차 개선
 - 용자금 교부 후 시설개선 공사 3개월 이내 시행. 공사 시작 후 구청 통보

2016. 1 . .

강 남 구
(위 생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-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61조 -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관리계획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편성
수혜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· 대상 : 강남구 관내 음식점 영업자, 강남구 음식점을 이용하는 주민
분야별 검토사항 (계속 : 0) (신규 :)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0) ③ 추진상 사전 결림돌 ----- (0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0) ⑤ 시장조사 ----- (0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0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0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) ·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
타 기관 사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타 구에서도 식품진흥기금 운영하고 있음.
전문가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해당사항 없음

2016년도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 용자계획

객석, 조리장,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에 자금을 지원하여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구민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친절환 서비스 제공으로 음식문화개선을 도모하고자 함.

I 식품진흥기금 개요

□ 설치개요

- 설치근거 :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 61조
- 설치연도 : 2000. 12. 29.
- 설치목적 :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
- 재원조성 :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등
- 사용용도 :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 용자,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교육·홍보 조사·연구사업 음식문화개선 식중독 예방사업 등

□ 식품진흥기금 용자

- 대 상 : 관내 영업신고된 식품접객업소와 모범음식점
- 용자종류

구 분	용자 한도액	용자금리	상환 조건
· 일반휴게·제과점 시설개선자금	1억원 이내 (총소요금액의 80%)	연리 2%	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
·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	2천만원 이내 (총소요금액의 80%)	연리 1%	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
·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[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한함]	5천만원 이내	연리 2%	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

□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

- 예산 규모 : 3,108,870천원
- '15년도 3,886,380천원 대비 △777,510천원 감축 편성

(단위:천원)

총 계	목적사업비			예치금
	소 계	고유목적사업비	용자금	
3,108,870	1,990,700	790,700	1,200,000	1,118,170

II 2015 식품진흥기금 용자 운용 내용

□ '15년도 기금 업종별 용자 실적 : 9건 / 430,000천원

(단위:천원)

구 분	용자 대상 업 소		건 수	금 액
일반용자	총 계		9	430,000
	육성자금	모범음식점	7	310,000
	시설 개선자금	일반음식점	1	20,000
		휴게음식점	.	.
		제 과 점	1	100,000
	어린이보호식품	.	.	

⇒ 2015년 용자 실적 9건 중 1건은 2014년 심의하고 2015년에 대출함.

□ 연도별 용자 실적

구분\연도별	2014년	2013년	2012년	2011년
용자 실적	975,000천원 (시설10, 모범10개소)	734,000천원 (시설7, 모범8개소)	980,300천원 (시설9, 모범14개소)	816,000천원 (시설13, 모범10개소)

○ 2014년도 975,000천원 대비 2015년도 430,000천원 용자 감소 사유

- 경기침체로 용자 신청 건수 감소
(2014년 신청 건수 : 27개, 2015년 신청 건수 : 19개)
- 용자 신청 업소의 담보 부족 등으로 은행 대출 불가 업소가 많음.

□ 용자 심의 실적

심의회 개최	용자심의 건수/금액	대출 건수/금액	미대출 (은행대출불가 등)
6회	19건 1,050,800천원	8건 380,000천원	11건 670,800천원

⇒ 대출 건수 8건은 2015년 용자 심의한 19건 중 대출건수임.

□ 용자금 회수 현황

○ 용자 현황 (2015.12.31기준)

구 분	대출금액	기상환액	잔 액
신한은행	2,060,300천원	770,828천원	1,289,472천원

○ 조기상환 현황

(단위:명,천원)

구분	대 상		이행실적		미이행			
	건	금액	건	금액	건	총계	완료금액	잔액
2015	2	95,800	1	12,500	1	83,300	16,660	66,640

Ⅲ 2016 식품진흥기금 용자 운용 계획

□ 추진기간 : 2016. 1. 1. ~ 12. 31.

□ 운용은행 : 신한은행

□ 용자금(예산) : 12억원

○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: 8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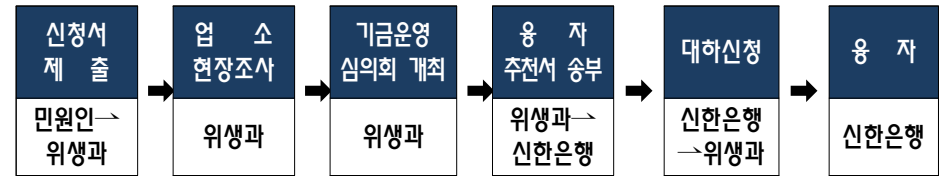
○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: 4억원

□ 용자대상업소 현황

(2015.12.31.현재/개소)

총계	일반음식점	휴게음식점	제과점	식품제조 가공업소	어린이보호식품 우수판매업소
15,214	11,393 (모범음식점 506개소)	3,024	402	153	242

□ 처리절차 <별첨3>참조



□ 추진계획

○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자 예산 조기집행

-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(60%이상)

○ 용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강화

- 한국외식업 중앙회 강남지회 등 관련 단체에 홍보 협조 공문발송
- 강남구청, 보건소 홈페이지 배너게시 및 공고문 게시
-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시 기금 용자제도 안내 및 교육자료 수록
- 식품진흥기금 용자로 시설개선이나 메뉴 개발 등을 통해 업소의 영업실적으로 연결된 사례 발굴 및 해당사항 홍보

○ 기금 용자실적 및 조기상환 대상 관리 등 사후관리 철저

- 용자업소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고 목적 외 사용 등 확인 시 수탁금융기관 및 영업자에 즉시 통보하여 조기 회수하도록 조치
- ※ 시설개선공사 전 용자신청 시 자금 교부 후 3개월이내 공사 미이행시 시설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기상환 유도
- 용자신청 시 조기회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안내하고 조기상환 대상이 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조기 회수조치
- 서울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(이하 ‘규칙’) 제12조에 따른 분기별 운용상황 보고서<별첨1>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접수 및 관리 철저
- 용자 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용자금 관리대장 <별첨2>을 별도로 작성·관리(규칙 제13조)

□ 용자종류 및 대상

용자종류	용자대상	사용용도
시설개선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일반휴게·제과점 ▶ 식품제조업소 ▶ 어린이보호식품 판매업소 ▶ 화장실 개선 희망 업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,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(식가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용품 구입 제외)
모범음식점 육성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업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위생관리시설 개선,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비 등 (인건비·임대료·용자금 상환 등은 제외)
화장실 시설개선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식품위생법에 의거 허가(신고) 받은 식품접객업소 	화장실 시설개선

※ 용자 제외 대상 (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8조)

- 단란주점·유호주점 영업자,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
-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용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 및 용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
- 동일인에 대한 중복용자 (업소수와 무관)

□ 용자 조건

구분	한도액	용자금리	상환조건	비고
시설개선자금	식품제조업소 ¹ (총소요금액의80%)	년2%	3년거치5년 균등분할상환	
	일반휴게·제과점 ² (총소요금액의80%)	년2%	1년거치3년 균등분할상환	
	화장실 시설개선자금 (총소요금액의80%)	년1%	1년거치2년 균등분할상환	위 1,2와 별도
	어린이보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(총소요금액의80%)	년1%	3년거치5년 균등분할상환	
육성자금	모범음식점 육성자금 5천만원	년2%	1년거치2년 균등분할상환	모범음식점에 한함

□ 용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상환대상 (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0조)

- 시설개선자금의 용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용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
-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
-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용자금 수령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

□ 용자처리시 유의사항

- 대상자 선정시 용자 제외대상이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확인철저
- 시설개선자금 신청의 경우 현장 확인
- 용자업소의 폐업, 지위 승계 시 용자금을 조기상환하도록 조치
- 용자대출업소에 대하여 용자금을 상환할 때까지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고 목적 외 사용 등 확인 시 대출취급은행에 즉시 통보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조기 회수토록 조치
- 육성자금의 사용 시 자금용자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사업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지도 필요

IV 행정사항

□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용자 계획 공고 : 구·보건소 홈페이지

- 별첨
1. 기금운용관리 상황 보고서
 2. 식품진흥기금 용자금 관리대장
 3. 용자처리절차
 4. 식품진흥기금 용자 공고문
 5. 용자 서식 각 1부.

(별첨 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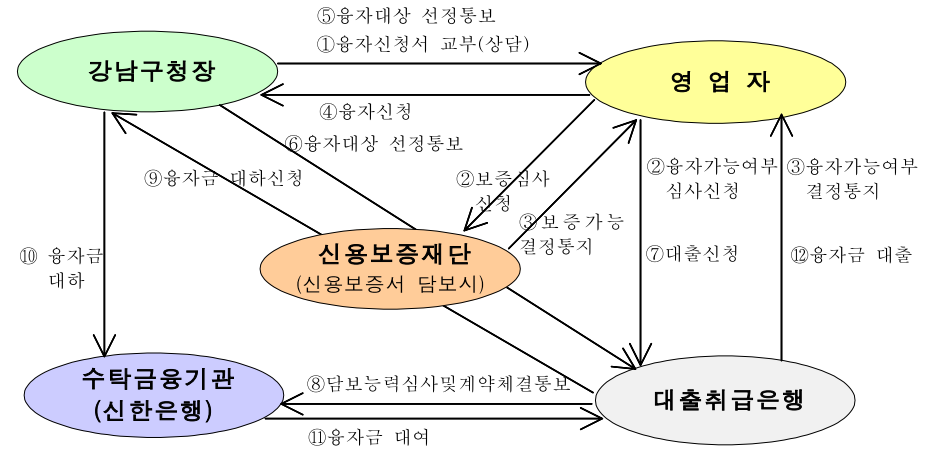
【 사용자처리절차 】

□ 세부용자처리절차

- **용자신청 접수** : 강남구보건소 위생과
- 신청서 접수 전에 용자가능여부 심사(신한은행, 신용보증재단)
- **용자대상자 선정** :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심의
- **용자취급 은행** : 신한은행
- **대출시행** : 대출신청(확정자), 취급은행(대출), 수탁은행(자금대하, 대어)

	용자절차	처리
용자신청	①용자신청서교부·상담(구→영업자)	구
	②용자가능여부 심사신청(영업자→은행) ※신용보증대상은 보증심사신청(영업자→신용보증재단)	영업자
	③용자가능여부 결정통지(은행→영업자) ※신용보증대상은 보증가능여부결정통지(신용보증재단→영업자)	대출취급은행
	④용자신청(영업자→구청)	영업자
용자대상자 선정, 확정	⑤용자대상 선정 및 통보(영업자안내)	구
	⑥용자대상 선정통보(구→대출취급은행)	구
대출시행	⑦대출신청(영업자→취급은행) ※신용보증대상은 보증서 발급신청(영업자→재단)	영업자
	⑧담보능력심사 및 계약체결통보(취급은행→수탁은행) ※신용보증대상은 보증서발급(재단→영업자):약 10일소요	취급은행
	⑨용자금대하신청(취급은행→구)	취급은행
	⑩용자금대하(구→수탁은행)	구
	⑪자금대여(수탁은행→대출취급은행)	수탁은행
	⑫대출(대출취급은행→영업자)	취급은행

□ 용자처리 흐름도



□ 신청 구비서류

- 식품진흥기금 용자신청서
-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사업계획서
-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(모범음식점)
- 사업이행확약서
- 시설개선 완료신고서(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 첨부)
- 영업신고증, 사업자등록증, 지정서(모범음식점) 사본
- 세부견적서 (위생시설개선 자금의 경우에 한함)

2016년도 강남구식품진흥기금 용자계획을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. 1. .

강 남 구 청 장

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용자계획 공고

1. 2016년도 용자규모 : 12억원

- 시설개선자금 8억원,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4억원

2. 용자대상 및 조건

구분	대 상	용자 한도액	용자 이율	용자기간 및 상환방법
시설 개 선 자 금	· 식품제조업소 [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(신고)를 받아 강남구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]	·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의 80%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	연리 2%	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
	· 일반·휴게·제과점영업 [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(신고)를 받아 강남구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, 제과점 영업자]	·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%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	연리 2%	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
	·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[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(신고)를 받아 강남구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]	·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의 80%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	연리 1%	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
	·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[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]	·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의 80% 이내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	연리 1%	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
육성 자금	· 모범음식점 [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]	·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	연리 2%	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

※ 용자제외 대상(공통)

- 단란주점·유흥주점
-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용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용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
- 동일인에 대한 중복용자 제한(많은 업소에 용자 혜택 부여)

3. 용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상환대상 (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0조)

- ① 시설개선자금의 용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용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②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
- ③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
- ④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용자금 수령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

4. 용자 취급은행 : 신한은행

5. 용자신청 : 강남구보건소 위생과에 신청

가. 용자신청기간 : 연중 신청

나. 구비서류

- 식품진흥기금 용자신청서 1부
-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
-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(모범음식점) 1부
- 사업이행확약서 1부
-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1부(※시설개선 완료후) - 세무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 첨부
- 영업신고증, 사업자등록증, 모범음식점 지정증 사본 1부
- 세부견적서(위생관리시설개선 자금의 경우) 1부
-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위생과(☎ 3423-706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				
신 청 인	① 대표자성명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업 소 명		④ 전 화 번 호	
	⑤ 주소(소재지)		⑥ 사업자등록번호	
사업체규모	⑦ 영업장총면적	㎡	⑧ 자 산 총 액	천원
대 상 업 종	⑨ 업 종	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식품제조업, 제과점, 위탁급식영업, 모범음식점, 기타		
자 금 용 자 신 청 내 역	⑩ 실 소 요 금 액	⑪ 융자신청금액	⑫ 비율(⑩/⑪)	
			%	
위와 같이 「강남구 식품진흥기금융조례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융자를 신청합니다.				
구 청 담 당 (직성명:)		지정은행확인		
본인확인	(인)	은행명	(지점)	
영업신고 확인	(인)	대 출	가능, 불가	
사업자등록 확인	(인)	확인자	(인)	
사업계획 적정 확인	(인)			
재대출, 중복여부 확인	(인)			
현장 확인(시설개선시)	(인)			
기 타	(인)			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년 월 일</p> <p>신청인 (인)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강 남 구 청 장 귀하</p> </div> </div>				
<p>구 비 서 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계획서 2. 사업이행확약서 3. 영업신고증 사본 4. 사업자등록증 사본 5. 모범음식점 지정증(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) 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				
신 청 인	① 성 명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업 소 명		④ 주 소	
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	⑤ 영업장총면적	㎡(평)		
	⑥ 계획내용 (구체적으로 기재)	(공사 예정일 :)		
자 금 용 자 신 청 내 역	⑦ 실소요금액	⑧ 융자신청금액	⑨ 비율(⑧/⑦)	⑩ 비 고
			%	
위와 같이 「강남구 식품진흥기금융조례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				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년 월 일</p> <p>신청인 (인)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강 남 구 청 장 귀하</p> </div> </div>				
<p>증빙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견적서 2. 위생관리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 				

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후 사진(완료일 :)

(업 소 전 경)

(개 선 완 료 시 설)